

연별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군세				도세		도세	군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2010	3,935	3,330	3,936	3,041	25,803	3,231	241	-11,654
2011	4,830	3,464	4,293	3,392	20,904	3,493	37	-55
2012	7,212	3,788	4,418	3,782	20,520	3,772	59	-181
2013	10,998	3,981	4,568	3,740	23,126	3,891	138	107
2014	6,019	4,849	4,873	3,877	24,250	4,264	233	-3,493
2015	18,643	5,468	4,664	4,856	48,481	4,662	182	29
2016	24,468	6,315	5,093	5,576	45,783	5,119	271	529
2017	26,910	6,890	5,368	5,271	47,964	5,029	193	379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01~2018)

제3절 재정지출 및 회계

1. 우리나라의 재정운영

오늘날의 정부는 치안·국방·일반행정·외교·교육·보건 등의 기본적인 임무 외에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교통·통신·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비 및 사회복지의 확충 등 다양한 역할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지출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거나 공채를 발행하여 적절한 수입을 얻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수입과 지출을 통하여 재정(public finance)을 수행해 나간다. 현대 혼합경제에서는 사회간접자본형성, 민간투자를 위한 재원조달, 조세 또는 기타 재정수단에 의한 민간투자촉진, 시장의 실패에 대한 시정, 성장잠재력 배양,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재의 적정공급, 경제안정유지 등을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이 불가피하다. 이는 원래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정의 규모 및 구성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로서, 이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며 그 효과 또한 대단히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완전고용·물가안정·국제수지균형 등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의 조성, 소득의 재분배, 사회복지의 증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수립 아래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기조는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는 건전재정기조의 유지였다. 건국초기에는 재정규모도 빈약하였고, 재정제도나 재정정책도 체계화되어 있지 못했다. 국가기반이 형성되기도 전에 6·25전쟁을 겪게 되어 재정활동도 건국 초기에는 국가형성에, 1950년대에는 전쟁수행과 전쟁복구 및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근로계층과 기업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도저히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부존자원과 기술이 모두 빈약하였던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전망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정부의 역할 또한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문제였다. 거의 모든 경제정책수단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조직되었다. 재정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1960년대의 재정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장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는 자본의 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자를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정책에 의존하여 부족한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우선 막대한 규모의 재정자금이 도로·발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공장 등 생산시설의 건설에 투자되었으며, 조세도 저축 및 투자에 의한 민간의 자본축적을 가능한 한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배려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적 석유파동과 세계경제침체, 그리고 1970년대 후반의 중동 경기 과열이라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재정활동도 초기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융자의 증가, 후반기에는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운영되었다. 1970년대 역시 재정투융자를 통한 전략산업분야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성장지원체제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에는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이 주어짐으로써 재정도 이를 위하여 긴축 운영되었다. 특히 물가가 안정된 1986년 이후에도, 3저 현상에 기인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이라는 인플레이션 요인을 흡수하기 위하여 재정은 긴축 운영되었다. 1970년대까지 성장위주로 재정이 운영된 결과로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개발투자가 미흡하여 계층간·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에서 사회개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경제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의 긴축재정은 과거 지속되던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정부부문을 통화증발요인에서 통화환수 요인으로 전환시켜 경제안정기조의 회복에 기여하였고, 국제수지흑자·외채축

소·건전재정기조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정기능의 위축으로 사회간 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사회적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수준향상과 증가하는 복지·형평 제고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의 충족에도 미흡하였다. 그리고 과다한 세계 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는 재정운영상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1990년대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되는 등 정부예산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구조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간 접자본의 확충, 사회개발 확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특히 농어촌 개선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세계무역구조 개편과 우리 경제의 개방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상황인식 아래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89년 이후 재정기능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성장잠재력 배양 등 효율성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비에 대한 투자수요에 어울리는 재정의 복지기능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1997년에 발생한 IMF사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침체를 가져왔으며,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발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계속된 경제침체로 시작된 2010년대에는 기업구조조정 자금과 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었다.

1997년 IMF 사태로 확산된 경제성장의 둔화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또 한번의 경제 충격을 가져오게 되었다. 누적된 실업의 증가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창업자금지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일자리 창출확대,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 차상위계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지출 등이 201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22>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수립 당시 중앙정부의 세출규모는 3천만원 수준이었으나 1997년에는 98조 3,299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 재정규모는 1961년 996억 원에서 1997년 173조 4,1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의 재정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합계의 대GNP비율을 의미한다. 조세부담률은 1953년의 5.1%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1975년에 15%를 넘어섰고 1994년에는 20% 수준에 도달했다. 국세부담률의 경우 1978년에 14% 수준에 이른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지방세 부담률의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조세부담의 증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

<표 222>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연별	총규모			중앙재정			지방재정		
		대GNP	증가율		대GNP	증가율		대GNP	증가율
1948	0.3
1953	119	24.8	133.3
1961	996	33.9	...	797	27.1	11.5	199	6.8	...
1970	6,967	25.0	5.1	5,990	21.5	3.3	977	3.5	17.3
1980	104,964	28.5	26.8	86,478	23.5	33.7	18,486	5.0	2.2
1990	446,182	25.0	27.0	325,369	18.3	20.5	120,813	6.8	48.4
1997	1,734,188	33.0	7.9	983,299	23.6	14.7	390,889	9.4	-6.0

출처 : 재정경제부, 재정 결산개요 ; 한국개발연구원,『한국재정 40년사』;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

2. 일반회계예산

1) 일반회계의 의의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회계로서, 특별회계의 상대개념이다. 원래 국가의 회계는 그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또 재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한 개의 예산으로 통일하고, 예산단일주의원칙에 따라 일체의 세입·세출을 종합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철하면 실제상의 불리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현행 재정법은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별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경비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종류에는 기업 특별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국가재정의 근간(根幹)이 되는 중심적인 회계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와 함께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울진군의 예산결산 총괄

울진군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예·결산총괄 상황을 살펴보면, <표 223>에서 볼 수 있듯이 연차적으로 예산증가가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527,615백만원에서 2011년에는 일시적으로 0.24% 감소한 519,047백만원이었고, 2012년에

는 2.1%가 증가한 530,053백만원, 2015년에는 43.2%가 증가한 894,523백만원, 2016년에는 9.3%가 증가한 977,396백만원이었다. 또 여기에서는 예산총액 중 일반예산의 비중이 58.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예산은 41.6%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3> 울진군의 예산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세입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2010	527,615	365,902	161,713	536,138	372,095	164,043
2011	519,047	352,830	166,217	525,475	359,775	165,699
2012	530,053	370,744	159,310	544,550	376,791	167,758
2013	626,511	450,868	175,643	634,978	459,154	175,824
2014	624,723	446,111	178,613	634,907	449,707	185,200
2015	894,523	474,162	420,372	909,374	481,160	428,214
2016	977,396	512,238	465,158	1,002,792	534,127	468,665
2017	974,599	569,566	405,033	987,182	575,831	411,351

연도	세출			잉여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2010	345,729	293,647	52,082	190,409	78,448	111,961
2011	337,569	292,566	45,002	187,906	67,210	120,697
2012	344,044	293,188	50,856	200,505	83,603	116,902
2013	422,293	349,051	73,243	212,684	110,104	102,581
2014	428,855	343,013	85,842	206,052	106,694	99,358
2015	499,696	369,083	130,613	409,678	112,077	297,601
2016	514,645	387,961	126,684	319,019	42,838	276,181
2017	526,821	399,324	127,498	460,361	176,508	283,853

* 순세계잉여금임.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1~2018)

3) 울진군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본 군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에서의 과목별 구분은 크게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22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과목별 세입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년도인 2017년의 경우 지방교부세 수입이 183,514백만원으로 31.9%, 보조금수입이 149,691백만원으로 2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47,781백만원으로 25.7%, 지방세수입이 47,490백만원으로 8.2%, 세외수입이 33,793백만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수입과 보조금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울진지역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미약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교부와 자체사업을 위한 보조금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표 224> 울진군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연별 및 과목별	예산현액		결산		예산 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13	450,868	100	459,154	100	102
2014	446,111	100	449,707	100	101
2015	474,162	100	481,160	100	101
2016	435,229	100	534,127	100	123
2017	569,564	100	575,829	100	101
지방세수입	46,514	8	47,490	8	102
세외수입	30,789	5	33,793	6	110
[경상적 세외수입]	9,553	31	10,140	30	106
재산임대수입	382	4	420	4	110
사용료수입	4,054	42	4,293	42	106
수수료수입	750	8	962	9	128
사업수입	1,060	11	914	9	86
징수교부금수입	1,627	17	1,736	17	107
이자수입	1,680	18	1,815	18	108
[임시적 세외수입]	21,236	69	23,653	70	111
재산매각수입	25	0	25	0	100
부담금	610	3	908	4	149
잡수입	20,316	96	22,552	95	111
지난년도수입	285	1	168	1	59
지방교부세	178,651	31	183,514	32	103

연별 및 과목별	예산현액		결산		예산 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재정보전금	12,043	2	13,556	2	113
보조금	153,782	27	149,691	26	97
지방채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7,785	26	147,785	26	100
[보전수입 등]	147,781	100	147,781	100	100
잉여금	62,658	42	62,658	42	100
전년도이월금	85,123	58	85,123	58	100
용자금원금수입	-	-	-	-	-
[내부거래]	4	0.0	4	0.0	100.0
전입금	4	100.0	4	0.0	100.0
예탁금및예수금	-	-	-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8)

4) 울진군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표 225>에서 볼 수 있듯이, 울진군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과목별 구성은 크게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결산 비중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부문의 세출이 21.8%로 가장 높고, 다음이 사회복지비로 17.7%, 기타가 13.6%, 환경보호 12.8%, 문화 및 관광 7.4%, 일반공공행정비 6.7%, 국토 및 지역개발비 6.4%, 공공질서 및 안전이 5.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5>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연별 및 과목별	예산현액		결산		예산 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13	450,868	100	349,051	100	77.4
2014	446,111	100	343,013	100	76.9
2015	474,161	100	369,082	100	77.8
2016	435,229	100	387,961	100	89.1
2017	569,566	100	399,323	100	70.1

연별 및 과목별	예산현액		결산		예산 대 결산비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일반공공행정	36,270	6.4	26,660	6.7	73.5
공공질서 및 안전	29,644	5.2	20,492	5.1	69.1
교육	3,689	0.6	3,581	0.9	97.1
문화및관광	63,944	11.2	29,684	7.4	46.4
환경보호	56,503	9.9	51,103	12.8	90.4
사회복지	79,462	14.0	70,829	17.7	89.1
보건	12,711	2.2	9,744	2.4	76.7
농림해양수산	117,195	20.6	86,906	21.8	74.2
산업,중소기업	17,282	3.0	8,551	2.1	49.5
수송및교통	30,303	5.3	12,068	3.0	39.8
국토및지역개발	56,026	9.8	25,595	6.4	45.7
과학기술	-	-	-	-	-
예비비	9,412	1.7	-	-	-
기타	57,125	10.0	54,110	13.6	94.7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8)

3. 특별회계예산

1) 특별회계의 의의

특별회계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따로 계산하여 정리하는 회계이다. 국가의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의 세입으로 특정의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종류에는 기업특별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기업특별회계(企業特別會計)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경영함으로써 그 합리적 경영을 기하려는 특별회계인데, 이에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철도사업 특별회계·정보통신 사업 특별회계·조달사업 특별회계 등이 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하는 특별회계로서, 여기에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93년 12월 설치, 2007년 1월 1일 폐지]·교도작업 특별회계[독립채산제 회계] 등이 있다. 한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의 자금의 전출입 관계에 따라 독립형·기여형·의존형 등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독립형(獨立型)은 교도작업특별회계처럼 일반 회계와는 아무런 자금 전출입이 없이 그 예산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이고, 기여형(寄與型)은 과거의 전매사업특별회계[지금은 없어졌음]와 같이 자체의 수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키는 경우이며, 의존형(依存型)은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轉入金)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에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 등의 기업특별회계와 문화재관리·산업재해보험·국립의료원 등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국가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자금특별회계],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경리특별회계]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기업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조 3항].

2) 울진군의 특별회계예산 운용

<표 226>에서 볼 수 있듯이 울진군의 특별회계는 2013년에 회계수가 11개에서, 2016년에 10개, 2017년에는 9개로 되어 2개가 감소되었다.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으로는 지방공기업상수도, 의료급여기금운영, 주차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농공지구지원사업, 치수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2017년의 경우 세입 대비 세출 내역을 검토해 보면,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은 63,752백만원의 세입에 33285백만원의 세출로 52.2%,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은 993백만원 세입에 888백만원 세출로 89.4%, 주차장사업은 349백만원 세입에 4백만원의 세출로 0.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2,697백만원 세입에 10백만원의 세출로 0.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43,506백만원의 세입에 56,137백만원의 세출로 23.1%, 농공지구지원사업은 1,374백만원의 세입에 105백만원의 세출로 7.6%, 치수사업은 456백만원의 세입에 218백만원의 세출로 47.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사업은 1,334백만원의 세입에 659백만원의 세출로 49.4%,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사업은 96,893백만원의 세입에 36,191백만원의 세출로 37.4%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6> 울진군의 특별회계 예산결산

(단위 : 백만원)

연별 및 과목별	회계 수	예산	세입	세출
2013	11	175,643	175,824	73,243
2014	11	178,613	185,200	85,842
2015	11	420,372	428,564	130,613
2016	10	465,158	468,665	126,684
2017	9	405,033	411,351	127,497
지방공기업상수도	1	57,801	63,752	33,285
의료급여기금운영	1	987	993	888
주차장	1	349	364	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	2,697	2,679	10
주택사업	1	-	-	-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	242,198	243,506	56,137
농공지구지원사업	1	1,303	1,374	105
치수사업	1	452	456	2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	1,327	1,334	659
기반시설	-	-	-	-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1	97,919	96,893	36,191

출처 : 울진군,『울진통계연보』, (2018)

3) 울진군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표 227>에서 볼 수 있듯이 울진군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과목별 수납내역과 비중에서 기타이전수입은 2,442백만원으로 57.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20백만원으로 21.6%, 자산수입 수납액은 703백만원으로 16.5%, 기타수입은 125백만원으로 2.9%이다. 또 2016년 대비 2017년의 교육비 특별회계 수납액은 1.4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재산수입 미수납액이 1,707천원이 수납될 경우 약간의 계산 차는 있을 수 있지만 비중면에서나 액수면에서 큰 영향력은 없다.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은 예산액 보다 수납액이 7백만원이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군내 학교에서의 입학정원미달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27>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연별	예산①	징수결정액	수납액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증감 (②-①)
2013	1,046	1,046	1,046	-	-	-
2014	3,181	3,254	3,247	-	8	66
2015	1,441	1,442	1,434	4	2	-7
2016	2,892	3,041	3,038	-	2	146
2017	4,143	4,255	4,253	-	3	110
[이전수입]	3,369	3,362	3,362	-	-	-7
중앙정부이전수입	-	-	-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20	920	920	-	-	-
기타이전수입	2,449	2,442	2,442	-	-	-7
[자체수입]	774	893	891	-	3	116
교수-학습활동수입	-	-	-	-	-	-
행정활동수입	62	59	59	-	0	-3
자산수입	703	703	703	-	-	0
이자수입	3	4	4	-	0	1
적립금수입	-	-	-	-	-	-
금융자산회수	-	-	-	-	-	-
기타수입	7	128	125	-	3	118
[차입]	-	-	-	-	-	-
지방교육채및학교채	-	-	-	-	-	-
[기타]	-	-	-	-	-	-
전년도이월금	-	-	-	-	-	-

출처 : 울진군, 『울진통계연보』, (2018)

<표 228>에서 볼 수 있듯이 울진군의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7년의 세출내역과 그 비중에서 학교재정관리비가 8,155백만원으로 39.1%,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7,102백만원으로 34.1%, 교수학습지원활동비가 2,164백만원으로 10.4%, 교육복지지원비가 1,226백만원으로 5.9%, 기관운영관리비가 1,238백만원으로 5.9% 지출되었다. 이 중 학교재정관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대비 지출액은 40.0%가 증가되었다.

<표 228>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연별	예산①	예산결정후증감액②			예산현액 (①+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 출결정액	이용 및 이체				
2013	21,648	330	-	-	21,978	17,948	3,658	372
2014	17,580	3,658	198	-	21,437	19,528	1,328	581
2015	16,792	1,328	-	-	18,120	16,770	901	448
2016	17,558	901	-	-	18,459	16,745	985	730
2017	29,215	985	4	-	30,204	20,841	-	9,363
[유아및초중등교육]	27,538	653	-	-	28,191	19,200	-	8,992
인적자원운용	122	-	-	-	122	106	-	16
교수·학습지원활동	2,194	-	-	-	2,194	2,164	-	30
교육복지지원	1,226	-	-	-	1,226	1,226	-	-
보건/급식/체육활동	458	-	-	-	458	447	-	11
학교재정지원관리	8,155	-	-	-	8,155	8,155	-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383	653	-	-	16,037	7,102	-	8,935
[평생·직업교육]	195	-	-	-	195	194	-	1
평생교육	195	-	-	-	195	194	-	1
직업교육	-	-	-	-	-	-	-	-
[교육일반]	1,483	331	4	-	1,818	1,448	-	370
교육행정일반	219	-	4	-	223	210	-	13
기관운영관리	1,264	331	-	-	1,595	1,238	-	357
지방채상환 및 리스크	-	-	-	-	-	-	-	-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출처 : 울진군,『울진통계연보』, (2018)